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755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1.12.20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협의토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정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[별표 1] 비고 제2호를 삭제함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〔별표 1〕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[별표 1] <u>중개보수</u> <u>한도(제2조제1항관련)</u> <u>(생략)</u></p> <p>※비고 1.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. 2.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·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. 가.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(1) 9억원 이상인 매매·교환인 경우: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(2)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: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.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·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</p>	<p>[별표 1] <u>중개보수의</u> <u>한도(제2조제1항 관련)</u> <u>(생략)</u></p> <p>※비고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·교환 및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·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[별표 1] 중개보수의 한도(제2조제1항 관련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※비고 1.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중개보수의 한도(제2조제1항 관련)
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0,000원
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0,000원
	2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-
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0,000원
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0,000원
	1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
	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

※ 비고

1.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중개보수 한도(제2조제1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2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거래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거래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상한요율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매매·교환</td> <td>5천만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6</td> <td>2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8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이상 6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6억원 이상 9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</td> <td>5천만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2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>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이상 3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3억원 이상 6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비고 1.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. 2.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·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. 가.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(1) 9억원 이상인 매매·교환인 경우: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(2)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: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.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·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</p>	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0,000원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0,000원	2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6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5	-	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0,000원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0,000원	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천분의 3	-	3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<p>[별표 1] 중개보수의 한도(제2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2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거래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거래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상한요율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매매·교환</td> <td>5천만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6</td> <td>25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8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이상 9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15억원 이상</td> <td>1천분의 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</td> <td>5천만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2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>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이상 6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15억원 이상</td> <td>1천분의 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비고 1.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. <삭 제></p>	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0,000원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0,000원	2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	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-	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0,000원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0,000원	1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	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천분의 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